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00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역량중심의 인사제도를 정립하기 위하여 심사승진 가점제도를 개선하고, 해양경찰정비창 직제 개편 등 신규 소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인사운영을 하기 위한 개정임.

3.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정비창 직제 개편에 따른 부산정비창 권한 및 역할 정비

- 1)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해양경찰정비창장의 임용권의 일부를 부산정비창장으로 다시 임용하는 범위 신설(안 제4조제6항)
- 2) 부산정비창에서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에 대해 승진 대상자 명부를 구분하여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해양경찰정비창장이 통합하여 작성토록 추가(안 제58조제1항 및 제4항)
- 3) 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중 보통승진심사위원회로 할 수 있는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에 부산정비창 추가(안 제63조제2항)
- 4) 안 제63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해양경찰정비창에서 통합하여 심사할 수 있도록 추가(안 제63조제3항)

나. 소속기관에 대한 임용권 위임 개선(안 제4조)

육아휴직 등의 증가에 따라 지방청장 및 교육원장에 위임되어 있던
경위·경감 휴직과 복직을 경찰서장·연구센터 등 소속기관에 위임

다. 대규모 경력경쟁채용 및 임용 근거규정 보완(안 제15조)

대규모 경력경쟁채용하는 해양경찰 공무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직위군(群)
으로 채용하여 해당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도록 근거 보완

라. 1년 미만 단기 파견 시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절차 제외(안 제47조)

경찰공무원의 원활한 인사 운영을 위하여 단기 파견 시, 인사혁신처
장과의 협의 절차없이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파견토록 개정

마. 경찰관 승진심사 가점 개선(안 제58조)

전문직위에 임용된 전문관 및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에 대해 승진
심사 가점을 부여할 있도록 가점의 근거를 신설

바. 정년 연장의 대상인 특수업무에 해양경찰업무 추가(안 제96조)

육상에서 근무하는 경찰청과 같이 규정된 정년 연장의 대상인 특수
업무에 해양경찰 업무인 해양경비·안전, 함정근무 조문 추가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전보권”을 “전보·휴직·복직”으로,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을 “승진임용·파견·직위해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사교류 및 파견”을 “인사교류, 파견 및 징계로 인한 발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전보권”을 “전보·휴직·복직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을 “승진임용·파견·직위해제”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전보권”을 “전보·휴직·복직에 관한 권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을 “승진임용·파견·직위해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받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휴직

• 복직에 관한 권한

2.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

파견 •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3. 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

제47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5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 부산정비창

제58조제3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6.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제5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청장,”을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정비창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상자 명부

제63조제2항 단서 중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연구센터”를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연구센터·해양경찰부산정비창”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양경찰연구센터”를 “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 해양경찰정비창

제96조 중 “안보”를 “안보, 해양경비·안전, 함정근무”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및 지방해양경찰청(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임용권의 위임) ① ----- ----- ----- ----- ----- ----- -----.
1.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 중앙해양특수구조단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u>전보권</u> 및 경사 이하의 <u>승진임용·파견·휴직·직위해제</u> 및 복직에 관한 권한	1. ----- ----- ----- <u>전보·</u> <u>휴직·복직</u> -- <u>승진임용·파</u> <u>견·직위해제</u> ----- -----
2.·3. (생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은 정원의 조정, 신규채용, 승진임용, <u>인사교류</u> 및 파견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임용할 수 있다.	③ ----- ----- ----- <u>인사교류, 파견</u> 및 <u>징계로 인한 발령</u> ----- -----.
④ 해양경찰교육원장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④ ----- ----- -----.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해양경찰교육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연구센터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 파견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에 관한 권한

⑤ 지방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찰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제2호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리 지방해양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1.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권

2.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 파

-----.

1. -----
----- 전보
· 휴직 · 복직에 관한 권한

2. -----
----- 승진
임용 · 파견 · 직위해제-----

⑤ -----

-----.

-----.

1. -----
----- 전보 · 휴직 ·
복직에 관한 권한

2. -----
----- 승진임용 · 파

견 · 휴직 · 직위해제 및 복직

에 관한 권한

<신 설>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
위 제한) (생 략)

<신 설>

견 · 직위해제-----

⑥ 해양경찰정비창장은 해양경
찰부산정비창장에게 다음 각 호
의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을 재위임받은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은 제2호
에 따라 그 소속 경사 이하 경
찰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면 미
리 해양경찰정비창장에게 보고
해야 한다.

1.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의
전보 · 휴직 · 복직에 관한 권
한

2. 해양경찰부산정비창장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사 이하의
승진임용 · 파견 ·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
위 제한) ① (현행 제목 외의 부
분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
쟁채용시험등 중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
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정 이하의 경찰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그 시험 실시 당시에 정한 임용예정 직위의 군에 속하는 어느 하나의 직위에 임용할 수 있다.</u> 1. <u>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u> 2. <u>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u> 3. <u>법 제10조제3항제6호에 따라 선발하는 경찰공무원</u>
제47조(파견근무) ① ~ ⑤ (생략) <u><신 설></u>	제47조(파견근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u>⑥ 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파견기간(파견이 연장되는 경우에는 연장 후의 기간을 포함하며, 파견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교체 후의 기간을 포함한다)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해양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경찰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u>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u>총경 이하 경찰공무원에 대한 승진대상자 명부는 다음 각</u>	제58조(승진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 -----

호의 구분에 따른 해양경찰기관의 장(이하 “승진대상자명부작성자”라 한다)이 계급별로 작성한다.

1. ~ 7. (생략)

<신설>

② (생략)

③ 승진대상자 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신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교육원장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이 제63조제3항에 따라 경위 이하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진대상자 명부를 총평정점 순

1. ~ 7. (현행과 같음)

8. 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사 이하 계급의 경찰공무원:
해양경찰부산정비창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
에 따라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6. 다자녀를 양육 중인 사람

④ ----- 해양경찰청장, 해양경찰정비창장, ---

위에 따라 계급별로 통합하여 작성한다.

1. ~ 3. (생략)

<신 설>

⑤ ~ ⑦ (생략)

제63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생략)

②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감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양경찰청·해양경찰교육원·해양경찰정비창 또는 지방해양경찰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다만, 중앙해양특수구조단·해양경찰연구센터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는 해당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해양경찰기관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서 한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해
양경찰청장은 승진예정 인원 등

_____.

1. ~ 3. (현행과 같음)

4. 해양경찰정비창장: 해양경찰
정비창 및 해양경찰부산정비
창 소속 경찰공무원의 승진대
상자 명부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63조(승진심사위원회의 관할)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중앙해양특

수구조단 · 해양경찰연구센터 ·
해양경찰부산정비창 -----

③ _____

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중앙해양특수구조단, <u>해양경찰 연구센터</u> 또는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계급으로의 승진심사를 각 호에 따른 기관의 보통승진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u><신설></u> 제96조(정년 연장의 대상)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수사, 정보, 외사(外事), <u>안보</u> 등 특수 부문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전문직위에 임용된 사람 중에서 정년 연장 대상 공무원을 지정한다.	----- ----- <u>해양경찰연구센터, 해양경찰부산정비창</u>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해양경찰부산정비창 소속 경위 이하 계급으로의 승진심사:</u> <u>해양경찰정비창</u> 제96조(정년 연장의 대상) ----- ----- ----- <u>안보,</u> <u>해양경비·안전, 합정근무</u>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경찰청 인사담당관	
연 락 처	(032) 835 - 2335